

부산지방법원 2020. 4. 10 선고 2019나5068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0. 4. 10 선고 2019나50687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5. 28 선고 2018가소25412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피고,피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20. 3. 20

판결선 고 2020. 4. 10

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5. 28. 선고 2018가소2541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19, 2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(이하 'D'라 한다)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. 9. 28. 5,000만 원, 2016. 9. 29. 3,000만 원, 2016. 10. 14. 2,000만 원, 2016. 12. 7.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(위 2016. 12. 7.자 송금액 중 5,000만 원은 원고의 딸 E 명의로 송금하였다).

나. 원고와 D 와의 사이에 표준 투자 계약서가 5장 작성되었는데,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.(가) 투자자

(1) 성명 : A

표준 투자 계약서 [(주)D 회사채](나) 회사 : 給 D (이하 '회사'로 칭함)(다) 연대보증인 : F(라)

투자금액 : (투자 계약서 별로 상이)【제1조 : 목적】본 계약은 '회사'의 주력 사업인 석유제품의 (중질유, 대체 연료유 및 정제유) 수입 유통과관련되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투자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양 당사자간 체결하는 선의의 계약이다.

【제3조 : 수익률】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월 6%로 정하며, 필요 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.

【제4조 : 수익금 지급】, 회사,는 매월 약정된 날짜에 투자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한다.(부산은행 G A)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들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출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D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% 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하여금 2016 . 9. 경부터 2016 . 12. 7. 까지 합계 2억 원을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피고들은 D 로부터 투자금 소개 대가로 월 13- L 5% 의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는 월 6% 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편취하였다.

따라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써 미지급한 수익금 19,2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

피고들도 D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,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D로부터 월 10%의 수익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.

3. 판단

가.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 피 건 대 , 원 고 가 월 6% 의 수 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D 에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나아가 피고들이 월 투자금의 6%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

살피건대,원고 주장에의하더라도 피고들이 D로부터 원고 가지급받았어야 할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,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위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또한 원고가 D로부터 약정에 따른 월 6%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이상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원고의 위주장 역시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할 것이고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한영표판사 이재덕판사 홍준서